



Daejeon International  
Wine Expo  
www.djwinefair.com

조기신청기한 | 2026. 6. 30.(화) 일반신청기간 | 2026.7.1.(수) ~ 2026.7.31.(금)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djwinefair@gmail.com 팩스 042)250-1340

# 2026 대전국제와인EXPO 참가신청서

2026 Daejeon International Wine EXPO

## 1. 참가업체

회사명	한글 :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담당자 (부서/직위)		휴대폰	
출품품목	해외와인    국내생산와인    전통주    막걸리    Spirits    국내 기타주류 해외 기타주류    약세서리 및 용품    교육 및 서비스    식품류    대사관    기타		

## 2. 신청부스 및 참가비용

구분	크기	조건	단가 (부가세 별도)		신청부스	금액(부가세별도)
			일반	조기신청		
독립부스(면적만 제공)	3m X 3m	2부스 이상	₩ 870,000 / 부스	₩ 775,000 / 부스	부스	원
기본부스	3m X 3m		₩1,850,000 / 부스	₩ 1,200,000 / 부스	부스	원
추가옵션(코너부스)	-	3개부스 이하 신청	330,000원/ 참가업체		신청	원

※ 조기신청기한 : 2026.6.30.(화)까지

※ 기본부스 포함사항 : 바닥패트, 상호간판 1, 주간전기 1 Kw, 조명, 안내데스크1, 테이블1, 의자4, 얼음

## 3. 부대시설 및 기술지원 신청

품목		단가	신청수량	금액(부가세별도)
전기	주간단상 (220V / 60Hz)	₩ 60,000	Kw	원
	주간삼상 (220V / 60Hz)	₩ 60,000	Kw	원
	주간삼상 (380V / 60Hz)	₩ 60,000	Kw	원
	24시간 (단상(220V / 60Hz))	₩ 80,000	Kw	원
급배수		₩ 250,000	개소	원
인터넷 전용선 (LAN)		₩ 100,000	포트	원

※ 중복혜택 적용 불가, 단일 혜택 적용  
※ 전시 부스 참가 비용 할인 혜택 제공

## 4. 할인적용

구분	기준	할인율	비고
규모할인	4부스 이상	참가비 총액의 10% (부가세 별도)	
	6부스 이상	참가비 총액의 20% (부가세 별도)	
장기참가 할인	2021~2025년 내 3회 이상 참가실적	참가비 총액의 10% (부가세 별도)	
참가 할인	2025년 내 참가실적	참가비 총액의 10% (부가세 별도)	
특별할인	아시아와인트로피 5종 이상 유료 출품	참가비 총액의 10% (부가세 별도)	와인트로피 출품 등록 후 적용
	아시아와인트로피 10종 이상 유료 출품	참가비 총액의 20% (부가세 별도)	와인트로피 출품 등록 후 적용
대전 소상공인 특별할인	대전시 내 사업자, 소상공인 기준 해당	참가비 총액의 50% (부가세 별도)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바이어 참가 할인	와인수입·유통사 또는 대형마트 참가자로 2개 전시회 바이어 미팅 기준 충족 시	참가비 총액의 10% (부가세 별도)	테이스티와인미팅(11.4.~11.6.) 참가자 미팅 최소 5건 대전국제와인EXPO(11.6.~11.8.) 해외참가자 미팅 최소 5건

## 5. 총 참가비용

소계 (부스신청+기술지원신청)	원
부가세 (소계의 10%)	원
합계 (총 입금액)	원

## 6. 온라인 전시관 (참가비 무료)

참가	<input type="checkbox"/>	미참가	<input type="checkbox"/>
----	--------------------------	-----	--------------------------

뒷면의 참가규정에 동의하고 '2026 대전국제와인EXPO'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참가비 납입 완 료시 계약 성립)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참가비는 인보이스 수령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전액 납부 요망 (신청 후 3일 이내 발송)

2026. . .

대표자 / 담당자

인 /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87/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 대전관광공사 전시기획팀  
www.djto.kr / www.djwinefair.com

# 2026 대전국제와인EXPO 전시참가 규정

Terms & Conditions of Daejeon International Wine EXPO

## [제1조] 용어의 정의

- ①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과 함께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협회 및 단체, 개인 및 법인 등을 말한다.
- ② “전시회”라 함은 “2026 대전국제와인EXPO(Daejeon International Wine EXPO 2026)”를 말한다.
- ③ “주최자”라 함은 대전관광공사를 말한다.

## [제2조] 참가신청

- ①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시자는 참가 신청 후 참가비(부스 임차료, 기술지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참가비 납부가 확인되었을 경우 참가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또는 출품 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 [제3조] 참가비 납부조건

-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 후 2주 이내에 기술지원 사용료를 포함한 부스 임차료의 100% 납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이 마감기한(2026년 7월 31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전시회 개최 1개월 전까지 100% 완납하여야 한다.**

## [제4조] 전시면적 배정

- ① 주최자는 부스임차료 납부 순서에 따라 전시품목, 참가실적, 신청규모 등 합리적 자료를 기준으로 전시자의 부스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 전시부스 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받은 전시 면적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없다.

## [제5조] 전시물 관리

-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전시자는 전시홀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 ⑤ 주최자는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 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 ①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본조 1항의 취소 통보가 2026년 7월 31일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주최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부스 임차료를 전액 환불한다. 동 취소 통보가 **2026년 7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 ③ 기술 지원 사용료는 취소 일자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한다.
- ④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환불하지 않은 참가비는 차기 개최되는 전시회의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 ⑤ **전시자가 부스 임차료를 신청 마감기한(2026년 7월 31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부스 임차료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 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장치를 진행하고,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전시품에 대해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①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 ② 전시자는 전시 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③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11조] 방화규격

- ①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② 전시자는 장치기간, 전시기간, 철거기간 중 배정 면적 내 발생하는 누전 및 화재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③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보충규정

- ①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본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전시자는 주최자의 참가 규정과 대전컨벤션센터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